



법 무 부

수신자 강성준 귀하 (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천주교인권위원회)
(경유)

제 목 정보 (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) 결정 통지서

*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 9401399	접수일 2022. 06. 02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<p>1.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(법무부훈령 제1387호, 2021. 11. 11.)</p> <p>2. 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(법무부예규 제1294호, 2022. 3. 2.)</p> <p>※참고: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	---

공개 내용	<p>강성준 님 안녕하십니까? 법무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</p> <p>귀하께서 우리 부에 청구하신 정보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 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1항 :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(법무부훈령 제1387호, 2021. 11. 11.) <input type="radio"/> 2항 : 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(법무부예규 제1294호, 2022. 3. 2.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결정 내역 : 【부분공개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radio"/> 1항 : 부분공개 - (공개 내용) 「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」 제1조 등 305개 조항 등 <input type="radio"/> 2항 : 부분공개 - (공개 내용) 「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」 제1조 등 82개 조항 등
-------	--

공개 일시	2022. 06. 16. 13	공개 장소	
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개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·시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·출력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자파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·인화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-------	---

수령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전송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 등
-------	---



납부 금액	① 수수료 0원	② 우송료 0원	③ 수수료 감면액 0원	계(①+②-③) 0원
	납부일		수수료 산정 명세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 시) []

*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재판관련 정보 등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<p>비공개 근거 조항 :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,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·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敎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결정 내역 : 【부분공개】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1항 : 부분공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비공개 내용) 「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」 제2조 등 187개 조항 등 - (비공개 근거 및 사유) 「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」 제2조 등 187개 조항 등은 국가보안목표시설인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계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, 형의 집행 및 교정교화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득이 비공개하오니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p><input type="radio"/> 2항 : 부분공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비공개 내용) 「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」 제60조 등 64개 조항 등 - (비공개 근거 및 사유) 「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」 제1조 등 64개 조항 등은 국가보안목표시설인 교정시설의 시설별 분류수용에 필요한 사항 및 수용구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, 형의 집행 및 교정교화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



에 따라 부득이 비공개하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법무부 보안과 02-2110-3703]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법무부장관

교감 심유진 교정관 김유신 부이사관 김재술

협조자

시행 보안과-39128(2022. 06. 16.)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법무부 보안과

전화번호 02-2110-3703

팩스번호 02--

/ ujin0322@korea.kr

/ 공개 구분

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